

<p>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안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당해사업목적에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대상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대지의 분할제한)에 의거 최소분할면적(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시행령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케 하고자 함. 연 8%를 분할 납부할 경우 시중금리를 비교할 때 저금리라고는 할 수 없으며, 소규모 토지의 효율성 확보 및 빠른 매각을 위해서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함. <p>나. 수의매각대상 재산의 추가(안 제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 중 제25호에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불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토록 규정하고자 함. 이는 만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시유지가 있어 이를 제3자가 매수한 경우 매수자의 동의 없이 사업추진자체가 	<p>불가능하여 사업주체가 시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에게만 수의매각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다. 수의계약대상자 용어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안 제22조제3항제9호에서 언급한 수의계약대상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되고, ○ 조례개정안 제39조제5항제6호에서 수의계약대상자는 “인접토지소유자”로 명기되어 있음. ○ 실제 두 조항 모두 토지경계선을 접한 소유자만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수정안의 요지</p> <p>가. 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2항 “수의계약매각” 대상규정중 제7호에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규정하는 것과 합치되므로 수정코자 함. <p>나. 수정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제5항제6호7호중 “인접”을 “인접”으로 수정함. <p>7. 심사결과 : 수정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한다.</p> <p>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p>
---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출석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
석수당·안전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
한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건당 오백만원
(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
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 다만,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
세와 부과한 회계년도폐쇄일 현재 소송계
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위임사무 변경에 다른 적용례) 제6조의 개
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
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
2호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의2

제2항제2호”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인명구
조”를 “인명구조, 부상자치료”로 하고, 동조동
항제6호중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중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를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
으로 대물변제 받아”로 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
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
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
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
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
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